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2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

발 의 자: 박해철·조계원·정태호

서영석 · 이성윤 · 추미애

한민수 · 송옥주 · 강선우
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·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이와 같은 사업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또한 기후·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 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고, 자격 등 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음.

이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·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.

이에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기술의 연구·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,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,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·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7조 및 제23조).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"개발"을 "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"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·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23조 제목 중 "양성"을 "자격과 양성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등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, 지정취소의 절차 • 방법,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17조(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·<u>개발</u>사업 추진) ① 기상청장은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<u>개발</u>사업을 할 수 있다.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·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·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제2항에 따른 연구·개발사업의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개 정 안

데17조(
<u>개발 및</u>
<u>전문인력 양성</u>) ①
<u>개발 및 전문</u>
<u>인력 양성</u>
②
<u>개발 및 전문</u>
<u>인력 양성</u>

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 ·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 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수 있다.

다.

- 1. ~ 8. (생략)
- ④ ~ ⑦ (생 략)
- 성) ① ~ ② (생 략)
 - ③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 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<신 설>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④ ~ (7) (현행과 같음)
- 제23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 제23조(----- <u>자격과 양</u> 성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3항 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 기관 등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④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 사 양성기관의 지정, 지정취소 의 절차 • 방법, 제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